

보도자료 2008. 07. 28.	 <p>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</p>	
	담당부서	양형위원회
	담당자	운영지원단장 김우진 (☎ 3480-1924)
	공보관실 ☎ 3480-1451	

양형위원회, 한국형 양형기준제 채택

- 범죄를 유형 구분한 다음 유형별로 세분화된 형량범위 제시
- 양형인자를 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양형심리의 충실화 모색
- 양형의 예측가능성 · 적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□ 양형위원회 제2차 임시회의 개요

- 일시 : 2008. 7. 28.(월) 10:00 ~ 13:30
- 장소 : 대법원 16층 1601호 대회의실
- 주최 : 대법원 양형위원회(위원장 : 김석수)
- 참석 : 위원장 및 성낙송 상임위원 포함 위원 11명(임정수 위원 불참)

□ 의결 내용

-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
 - ▶ 개별적 양형기준 방식 채택

개별 범죄유형별(살인범죄, 성범죄, 사기범죄 등)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한다.

○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

▶ 유형분류 + 양형인자의 질적구분

양형기준은 범죄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적정한 처단형의 범위를 제시하고, 양형인자를 가중인자/감경인자, 특별인자/일반인자 등으로 질적 구분하되, 양형인자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○ 양형기준의 설정 순서(지난 9차 정기회의, 의결)

▶ 점진적 설정방안 채택

제1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한다.

○ 제1기 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(지난 9차 정기회의, 의결)

▶ 아래 범죄유형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

살인, 성범죄, 강도, 뇌물, 위증·무고죄, 횡령·배임

□ 의결 의미

○ 최초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틀 마련

- 위원회는 법률상 시한인 2009. 4.까지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왔음
- 수개월간의 위원회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'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'에 관한 주요 쟁점이 최종 의결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양형기준의 기본틀과 양형기준제의 거시적 방향이 결정

○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 제고

- 유사한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방지함으로써 양형의 균등성을 도모
- 구체적 사안별로 범죄에 상응하는 양형을 도출하게 함으로써 양형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

○ 형사사법의 투명화 · 합리화 구현

- 범죄유형별로 세분화된 구체적 형량범위를 제시함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임
- 범죄별로 고려되거나 고려되지 말아야 할 양형인자가 구분되어 제시됨으로써 양형심리의 충실화가 구현되고, 이를 통해 양형의 합리화가 촉진

○ 본격적인 양형기준안 작성 연구에 착수

- 이후로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들에 대하여 전문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예정
-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비롯하여 토론회, 공청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양형기준안을 설정할 계획

□ 주요 쟁점

○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

- 모든 범죄(혹은 대부분 범죄)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양형기준을 만들 것인지, 아니면 개별 범죄유형별로 각각의 양형기준을 만들 것인지

○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

- 양형에 있어 고려할 요소(예: 합의된 사정)를 수치화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, 아니면 질적으로 구분하여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

○ 양형기준의 설정 순서(지난 9차 정기회의, 의결)

- 양형기준을 대상범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설정할 것인지, 아니면 설정이 시급한 범죄부터 점진적으로 설정할 것인지

○ 제1기 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(지난 9차 정기회의, 의결)

- 양형기준을 점진적으로 설정하기로 할 경우, 제1기 양형위원회(2009. 4. 임기만료)가 기준 설정할 대상범죄

□ 쟁점별 제시된 방안

○ 하나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

- ① 개별 범죄유형별(살인범죄, 성범죄, 사기범죄 등)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
-  채택

[특징] 개별 범죄유형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,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음

- ② 원칙적으로 설정 대상범죄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

○ 개별 양형인자와 양형의 상관관계 반영방식

- ① 양형기준은 범죄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적정한 처단형의 범위를 제시하고, 양형인자를 가중인자/감경인자, 특별인자/일반인자 등으로 질적 구분하는 방안

 채택

[특징] 범죄자 및 범죄의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양형을 실현할 수 있음

- ② 양형기준은 세로축은 ‘범죄의 중대성’에 따라, 가로축은 ‘범죄경력’에 따라 등급화된 격자로 구성하고, 기타 양형인자를 중요성에 따라 계량화하여 등급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

- ③ 양형기준은 세로축은 ‘범죄의 중대성’에 따라, 가로축은 ‘범죄경력’ 또는 다른 양형인자의 변동에 따라 등급화된 격자로 구성하고, 기타 양형인자 중 재량적 양형인자는 중요성에 따라 계량화하여 등급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, 법률상 양형인자는 형량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서술하는 방안

□ 향후 일정

- 2008. 10.경 양형기준안 작성
○ 2008. 10. ~ 11.경 공청회 개최
○ 2009. 3.경 양형기준 설정